

행정심판청구 주요 내용

제 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5.6.23. 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행위를 수리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8.6.30.까지 연장하라

주장내용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

가. 이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부합하므로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를 이해하지 않는 피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 관계법령의 취지 : 존치기간 연장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가설전람회장 용도 전용을 하지 아니함. 적합사용중
- 이사건 가설건축물은 서울의 중소기업 및 기업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선전과 소개 전시 이와 관련한 교육과 설명회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가설전람회장’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이와 관련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 신고 수리를 방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합니다.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그동안 연장신고 수리를 해주었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함.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철거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 현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중소기업, 시민)
- 철거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손실이 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됨.

결 론

- 건축법상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부합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
-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
- 철거한다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처분명령재결이 아닌 처분재결을 하여 주시기 바람.

검토의견

△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 ① 현재 사용용도가 건축법에 적법하다는 것,
- ② 연장신고 수리 거부가 건축법에 위법(용도적합, 신뢰보호 원칙위반, 공익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음),
- ③ 철거는 공익에 반하는 것임.

으로서,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건축법에 위법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건 행정심판 이후 또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처분재결을 요청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 ① 실제 사용 용도는 가설전람회장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하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 ② 공익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대응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나,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불공정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우려됨.